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약관

목 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6조(공제금의 청구)

제7조(공제금의 지급절차)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제10조(손해방지의무)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제12조(잔존물)

제13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공제계약의 성립)

제18조(청약의 철회)

제1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0조(계약의 무효)

-
-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22조(공제의 목적에 대한 조사)
 -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공제료의 납입

- 제24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중앙회의 보장개시)
- 제25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 제26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 제29조(계약의 해지)
-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31조(중앙회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32조(공제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33조(분쟁의 조정)
- 제34조(관할법원)
- 제35조(소멸시효)
- 제36조(약관의 해석)
- 제37조(중앙회가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 제38조(중앙회의 손해배상책임)
- 제39조(개인정보보호)
- 제40조(준거법)
-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공제의 목적

실손보상 소상공인 풍수해공제 특별약관

공제료분납 특별약관

공제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신용카드이용 공제료납입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야외간판 보장 특별약관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공제료정산 추가특별약관

공제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보통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공제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합니다) 사이에 피공제자가 공제의 목적[별표1 공제의 목적 참조]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으로 아래 마호의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나. 피공제자: 공제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 다. 공제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공제의 목적 : 이 약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물건으로 공제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별표1 공제의 목적 참조]을 말합니다.
- 마.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 바. 질문서 :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자가 작성하는 별도 서류로써 소상공인임을 확인하는 체크리스트 또는 공제가입목적에 대한 상세내역 등 중요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 가. 공제가입금액: 중앙회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할 때 중앙회가 지급할 최대 공제금을 말합니다.

나. 공제가액: 재산공제에 있어 피공제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공제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중앙회가 실제 지급하는 공제금은 공제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설명】

공제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공제가액은 통상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와 장소에서의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사와 계약자가 약정한 금액인 공제가입금액과 구별됩니다.

- 다. 자기부담금: 공제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 라. 공제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공제계약】

공제계약이란 동일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주체가 상호구제를 위하여 공제료에 상당하는 금전을 납입하고 그 가입자에게 소정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구제를 하는 계약으로, 가입자의 범위가 구성원 또는 특정 지역으로 한정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마. 대위권: 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중앙회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중앙회가 공제금의 지급 또는 공제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공제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영업일: 중앙회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공제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 ① 중앙회는 이 약관에 따라 공제기간 중에 공제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특

보(주의보·경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후 공제의 목적이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하 '풍수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때 기상청 및 홍수통제소 특보는 공제목적 소재지에 대한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공제목적 소재지의 시군 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공제목적물 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②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에 한함)인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기상청이 기상 예비특보를 발령하는 경우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파고, 고조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
3.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하는 경우

③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국고 또는 지방비 지원기준으로 인정한 1항의 재난 및 강풍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인접한 2동 이상의 공제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서 5동 이상 또는 해당 시(광역시, 특별시를 말한다)·도에서 50동 이상의 공제대상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④ 중앙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실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잔존물】

공제사고로 공제의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
- 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2조(잔존물)에 의해 중앙회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중앙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앙회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3. 공제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4. 풍수해로 생긴 화재, 폭발 손해, 단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추위, 서리, 얼음, 우박으로 인한 손해
6. 축대, 제방 등의 붕괴로 인한 손해, 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되는 사고일 때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침식활동 및 지하수로 인한 손해
8. 공제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한 손해
9. 전쟁, 내란,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10. 풍수해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11.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 먼지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공제의 목적인 건물이 풍수해로 직접 파손되어 공제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공제의 목적인 네온사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에(만) 생긴 손해

【이미 진행 중】

공제기간 중에 공제의 목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기상청(홍수통제소 포함) 기상특보(주의보경보) 또는 예비특보 발령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중앙회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중앙회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중앙회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공제의 목적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공제금의 청구)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중앙회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기타 중앙회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공제금의 지급절차)

- ① 중앙회는 제6조(공제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중앙회가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공제금】

공제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회가 예상되는 공제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공제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중앙회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표> 공제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공제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내지 제3항의 손해에 의한 공제금과 제4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 ④ 중앙회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공제기간에 대한 잔존공제가입금액으로 합니다. 공제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

- ① 중앙회는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액이 1사고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자 1인에 대한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자의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공제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금의 합계액}}$$

【예시】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계약A : 가입금액 2,000만원 / 계약B : 가입금액 3,000만원 / 공제가액 : 2,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 : 400만원 지급 = 1,0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 계약B : 600만원 지급 = 1,000만원 × 3,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계약A : 책임액 1,000만원 / 계약B: 책임액 1,000만원 / 손해액 : 1,000만원
 → 계약A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계약B : 500만원 지급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3. 이 공제계약이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이면서 공제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공제금을 그 다른 공제계약에 우선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중앙회가 타인을 위한 공제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공제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공제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공제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공제가입금액의 배분

공제목적물A : 공제가액 2,000만원

공제목적물B : 공제가액 3,000만원

하나의 공제가입금액 : 4,000만원

→ 공제목적물A의 공제가입금액 :

$$1,600\text{만원} = 4,000\text{만원} \times 2,000\text{만원} / (2,000\text{만원} + 3,000\text{만원})$$

→ 공제목적물B의 공제가입금액 :

$$2,400\text{만원} = 4,000\text{만원} \times 3,000\text{만원} / (2,000\text{만원} + 3,000\text{만원})$$

제10조(손해방지의무)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

- ① 손해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중앙회의 손해평가 및 풍수해보험법 제16조(손해평가)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릅니다. 단,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보험목적물의 손해구분)은 따르지 않습니다.
- ② 중앙회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공제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12조(잔존물)

중앙회가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내지 제3항의 공제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중앙회의 소유가 됩니다.

제13조(대위권)

- ① 중앙회가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중앙회는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중앙회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중앙회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중앙회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회에 알리고 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2. 공제의 목적을 양도할 때
 - 3. 공제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4. 공제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5.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중앙회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중앙회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중앙회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중앙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 또는 제1회 공제료 (이하 '제1회 공제료 등'이라 합니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공제료를 제외한 계약자가 부담하는 주민부담 공제료(이하 '주민부담 공제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중앙회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제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공제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공제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공제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기업성보험 계약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기업성보험】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을 말합니다.

【가계성 일반손해보험】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에서 정한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일반손해보험을 말하며, 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 등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을 포함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단,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경우 45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중앙회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로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중앙회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공제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중앙회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중앙회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중앙회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중앙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중앙회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앙회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중앙회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공제종목
 - 2. 공제기간
 - 3. 공제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4. 계약자, 피공제자
 - 5. 공제가입금액, 공제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중앙회는 계약자가 주민부담 공제료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공제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중앙회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중앙회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공제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공제의 목적에 대한 조사)

중앙회는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공제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3조(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중앙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중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중앙회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공제계약을 말합니다.

제 5 관 공제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중앙회의 보장개시)

- ① 중앙회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주민부담 공제료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② 계약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맺은 풍수해보험사업약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지원공제료를 내야 합니다.
- ④ 중앙회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주민부담 공제료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중앙회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중앙회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중앙회가 증명하는 경우
 2.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0조(계약의 무효) 또

는 제2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중앙회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⑥ 계약자가 주민부담 공제료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한 때가 주민부담 공제료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부담 공제료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⑦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중앙회는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중앙회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중앙회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중앙회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공제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26조(공제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중앙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회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중앙회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공제계약의 성립), 제24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중앙회의 보장개시) 및 제29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중앙회는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중앙회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중앙회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중앙회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③ 중앙회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앙회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공제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중앙회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중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중앙회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중앙회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공제상담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공제상담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앙회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중앙회는 다른 공제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중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설명】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공제금을 청구한 경우 중앙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중앙회는 이미 발생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중앙회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중앙회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중앙회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중앙회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중앙회는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공제료의 환급)

-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공제사고가 발생하고 공제금이 지급되어 공제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공제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중앙회에 납입한 공제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공제료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공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공제년도의 공제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공제년도에 속하는 공제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 2. 중앙회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 3. 공제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중앙회가 돌려드려야 할 공제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중앙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중앙회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년동안 공제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공제금 등에 대한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 ① 중앙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중앙회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중앙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중앙회가 제작한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공제상담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중앙회 제작의 공제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공제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중앙회의 손해배상책임)

- ① 중앙회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 상담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중앙회는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중앙회가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 ① 중앙회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앙회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공제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공제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중앙회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공제에 의한 지급보장)

중앙회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설명】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별표1] 공제의 목적

① 이 계약에서 공제의 목적이라 함은 공제증권에 기재된 다음의 건물 등을 말합니다. 단,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온실이나 건축법 제2조(정의)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빈집을 포함합니다) 또는 주택에 부속된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 건물은 제외합니다.

1. 건물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것으로 작업, 저장 등의 용도를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건조물 중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공제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공제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3) 건물의 부속설비 : 피공제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시설 및 집기비품

(1) 시설: 사용용도 및 각종 영업행위에 적합하도록 건물 골조의 벽, 천정, 바닥 등에 치장설치하고 내외부 마감재나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로서 건물의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2) 집기비품: 직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 또는 소지되는 것으로 점포나 사무실, 작업장에 소재하는 것

3. 기계 : 물리량을 변형하거나 전달하는 유용한 장치 또는 연소장치, 냉동장치, 전해장치 등 기계의 효용을 이용하여 전기적 또는 화학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4. 재고자산 : 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 상품과 저장품 및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공제의 목적에서 제외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특별약관

공제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분납)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계약자가 공제료(이 공제계약의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공제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납공제료”라 합니다)으로 나누어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제기간이 1년이고 연간 주민부담 공제료(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공제료는 제외합니다)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에만 해당됩니다.

제2조(분납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분납공제료를 다음과 같이 그 정한 날짜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 제1회 분납 (70%), 년 월 일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년 월 일 납입
2. 4회 분납 : 제1회 분납 (40%), 년 월 일 계약체결시 납입
 제2회 분납 (30%), 공제개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는 날
 제3회 분납 (20%), 공제개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되는 날
 제4회 분납 (10%), 공제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날

제3조(미납입공제료의 공제)

중앙회가 계약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를 넘을 때에는 미납입공제료 전액을 공제한 잔액을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공제료를 자동납입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공제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회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제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공제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공제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7조(공제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공제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중앙회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공제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민부담 공제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공제료의 영수)

중앙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공제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공제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공제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중앙회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 정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공제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중앙회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공제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공제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공제자와 동거하거나 피공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공제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피공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앙회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중앙회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공제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

상)의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중앙회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피공제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제금(사망공제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중앙회가 공제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공제금 청구를 받더라도 중앙회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중앙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중앙회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공제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야외간판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중앙회는 [별표1] 공제의 목적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야외간판이 공제기간 중에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기부담금 특별약관

제1조(자기부담금)

중앙회는 보통약관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서 정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에서 1사고당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 ① 피공제자가 다음 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공제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공제자로 피공제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써 노사합의에 의하며, 공제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중앙회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가 피공제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공제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약은 공제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공제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제 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공제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③ 중앙회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공제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공제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중앙회에 알리고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이 계약기간 중 공제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공제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공제의 목적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③ 중앙회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제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공제의 목적 교체 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공제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공제기간(공제의 목적 교체 전 계약의 공제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합니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 ① 피공제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공제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공제자가 공제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중앙회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제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 시에는 전환 후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공제료는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공제증권의 발급)

- ① 중앙회는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② 공제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공제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공제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공제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공제료의 정산)

- ① 중앙회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공제료를 정산합니다.
- ②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 제4조(공제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 없이 공제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공제자의 명부)

공제계약자는 항상 피공제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공제료의 정산방법)

공제료는 피공제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① 공제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공제자에 관한 서류를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공제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중앙회는 공제기간중이나 공제기간 만료 후 공제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제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③ 중앙회는 공제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공제료와 계약체결 시 산출한 예치공제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공제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공제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공제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공제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공제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공제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공제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새로이 증가된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